
 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 <p style="margin: 0;">2021. 1. 27.(수) 배포</p>		 <p style="margin: 0;">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</p>
보도일	2021. 1. 27.(수) 14: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·방송·통신 1. 27.(수) 14:00 이후 보도 가능	
담 당	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	과장 강정자 사무관 윤여진 (☎ 044-203-7256)
	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	과장 최홍석 사무관 신태환 (☎ 044-202-2802)
	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	과장 한준욱 사무관 기대정 (☎ 044-201-6806)
	행정안전부 주민과	과장 이지성 사무관 박주연 (☎ 044-205-3142)

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

- ◆ 모든 국민의 평생 건강을 위한 「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」
- ◆ 더 안전한 화학제품의 제조·소비 문화 정착을 위한 「제1차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」
- ◆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의 신변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 개선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1월 27일(수)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.

「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」

- 이번 「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」은 **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2.9세 연장**(2018년 70.4세→2030년 73.3세)하고, 소득·지역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여 '건강 형평성'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.
- **담배·술 등 위해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**하고, 아동·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생활터 중심의 건강실천 환경을 조성한다.
- **자살·약물 중독 고위험군,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**하여 적극적으로 개입·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,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.

- **암·심뇌혈관질환 등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관리**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고, 감염성 질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·기술 등 기반을 구축한다.
- **인구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**을 통해 모든 국민이 생애에 걸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, 모든 정부 정책에 건강이 고려되도록(HiAP; Health in All Policy) 범·제도를 개선한다.
※ 보건복지부, 별도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예정(1월 27일 16시)

「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(2021~2025)」

- 이번 「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」은 화학제품의 제조·유통·소비 등 **전(全) 과정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**하고,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·협력을 확대하여 **안전관리 혁신기반을 확립**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.
 - 이는 화학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제2의 가슴기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「**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**」에 따라 **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**으로,
 - 2019년 1월 법률이 시행된 이후 **2년간의 정책 성과와 높아진 소비자 인식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관리제도의 한계를 보완**했다는 의의가 있다.
※ 전문가 회의(2회)·온라인 공청회,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
- 첫째, **빠르게 변화하는 생활화학제품 시장 상황**에 맞춰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평가·검증을 강화하는 등 **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**한다.
 - **안전관리 대상 품목을 확대***하고 소비자 수요와 최신 제품 특성 등을 반영하여 **안전기준을 현실성 있게 재정비**한다.
*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: (2021년 1월) 39개 품목 → (2025년) 50개 품목

-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**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**는 **안전성 검증과 승인심사**를 신속히 추진*하고, **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 계획(로드맵)****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.

- * 방역에 사용 가능한 소독제 목록·지침 현행화, 소독제의 유·위해성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·홍보 강화, 불법제품 감시 강화 등

- ** 사용현황 표시의무(2023), 사용량·사용내역 보고(2024), 사용금지 제품 고시(2025) 등

- 전 성분 공개 제품을 확대하고 “**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 인증제***”를 도입하는 등, 정부-기업-시민사회가 협업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문화를 확산한다.

- * 제품 전 성분 공개, 유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하는 방식 등을 통해 유해 물질 사용을 저감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

- 둘째, **살생물제 승인유예기간*** 동안 발생할 수 있는 **안전관리 공백**을 보완하고, 산업계가 승인·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**사전예방적 살생물제 관리제도를 정착**시킨다.

- * 살생물물질의 유·위해성 정도에 따라 최대 10년(2029년 말)의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되었으며, 사용빈도가 높고 위해 우려가 큰 살균제·살충제 등의 물질은 2022년 말까지 사전 승인을 받아야 제조·수입 가능

- 국제적으로 승인된 살생물물질은 일부 제출 자료를 면제하는 등 **승인을 간소화**하고, **조기 검증(승인)**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.

- 승인평가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인적·물적 기반을 구축*하고, ‘승인 지원 전담팀’을 구성하여 **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:1 맞춤형 상담(컨설팅)과 승인자료 작성·준비 전 과정**을 지원한다.

- * 평가인력 추가 확보·전담조직 마련(2021~), ‘화학제품안전연구동’ 건축(~2023)

- **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**은 국민 노출 정도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하여 **위험도가 높은 경우 회수**하고, **코로나19 이후 관심도가 높아진 항균처리제품**은 **표시기준을 강화**하여 과대광고를 차단한다.

- 셋째, 제조·유통·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고, 제품 사용에 따른 **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·대응체계**를 구축한다.

- 온라인 판매증개·구매대행자가 **불법제품인지 여부를 확인**하도록 의무화하고, **초록누리 정보망과 연계한 실시한 확인 시스템**을 구축하여 **위해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**한다.

- 제품 출시 후에는 **위해우려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**하고 안전성 조사 대상을 지속 확대*하는 한편, 시장감시단 및 신고 포상금제 등을 활용하여 **소비자 주도의 시장 감시**를 강화한다.

- * (2020년) 1,700개 제품 → (2025년) 2,000개 제품

- **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원인 조사, 피해 구제**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제품 사용으로 인한 **중독 예방 및 응급 의료지원** 등을 수행하는 **전문기관***을 지정한다.

- * (가칭)국가화학제품중독정보센터: 화학제품 및 함유물질 노출·중독 관련 상담 및 그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, 병원 응급의료시스템과의 신속한 연계 등 수행

- 넷째, 화학물질·제품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, **대국민 소통·협력 다각화,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** 등을 통해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한다.

- 물질·제품의 확인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 수행하는 ‘**화학물질·제품 관리평가원(가칭)**’ 설립을 추진하고, 개별 시스템을 고도화*·연계하여 제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**유통추적시스템**을 구축한다.

- * 화학제품관리시스템(업무처리),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(정보수집·공개)

- 소비자를 대상으로 화학제품에 대한 **안전정보 제공 및 안전한 사용방법 교육·홍보**를 강화하고, 중소기업의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**재정적·기술적 지원**을 확대한다.

- **국내 주요 제품관리기관과의 합동 감시체계**를 마련하고, 글로벌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**국내 관리제도 해외 전파 등 정보 교류와 우수 업체의 해외진출 방안**을 적극 모색한다.

-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저감 기술, 척추동물대체시험법(非동물 시험법), 살생물제 위해성평가 시험방법 등의 개발을 위해, 연구 개발(R&D) 투자를 확대하여 안전관리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한다.

「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」

- 「주민등록법」은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,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본인 또는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열람(교부)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(법 제29조).
 - 그러나, 열람제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거서류(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서류)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, 신청 대상도 실제 보호가 필요한 범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.
 - 이에 정부는 **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·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(교부)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한다.**
- **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서류(상담사실확인서, 입소 확인서 등)도 가정폭력 증거서류에 추가하여, 수사기관이 처분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신변보호 공백을 보완한다.**
- **피해자와 그 자녀·부모의 주소지(세대)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(교부)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한다.**
 - 이를 통해,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녀·부모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냄으로써 2차 피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한다.
-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**채권·채무 등 이해관계**가 있는 경우에도, **피해자 주민등록 초본 열람(교부)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.**

